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24

발의연월일: 2021. 5. 20.

발 의 자:이수진·강득구·강병원

권인숙 · 김승원 · 문진석

박홍근 • 서동용 • 서영석

송갑석 · 신정훈 · 오영환

이규민 • 이동주 • 이성만

이장섭 • 이정문 • 임오경

정청래 · 조오섭 의원

(2091)

제안이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현행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에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이며,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하게 분리하여 수사전담기관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권으로 서 수사기관의 수사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하도록 해야 함.

이에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96조).
- 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7조의 2제4항).
- 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

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7조 의3제7항).

-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 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 관에게 수사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245조의5 제2항).
-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통지받은 고소 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 장에게 이의를 신청한 경우, 검 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45조의7제3항).
-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성실하게 재수사 착수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45조의8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223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전단 중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을 "구치소·경찰서 또는 지방특별수사청 유치장"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중 "수사촉탁"을 "구속영장 집행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수사와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으로 한다.

제151조제4항 중 "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을 "구치소·경찰서 또는 지방특별수사청 유치장"으로 한다.

제196조의 제목을 "검사의 수사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수 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지위와 직무에 관하여는 「특별수사청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9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성

실하게 보완수사 착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7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7조의4를 삭제한다.

제213조제2항 중 "경찰관서"를 "경찰관서 또는 지방특별수사청"으로 한다.

제222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가"를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8조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5조의2제1항 중 "검사는 공소제기"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또는 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5조의3제2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를 "있고, 사법경찰관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 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있다.
- 제245조의8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성실하게 재수사 착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9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 방특별수사청이 그 사건을 승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u>구</u>	구치소·경
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	찰서 또는 지방특별수사청 유
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	<u> 치장</u>
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査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u>구속</u>
屬託)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	<u>영장 집행 촉탁</u>)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	
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	구속영장
<u>속영장</u> 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	
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	4
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 <u>구치소</u>	<u>구치소·경</u>
<u>또는 경찰서유치장</u> 에 유치하여	찰서 또는 지방특별수사청 유

집행한다.

⑤ ~ ⑧ (생 략)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 제196조(검사의 수사요청) 검사는 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를 수사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략) <신 설>

<신 설>

~ ⑥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 는 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 과 증거의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지위와 직무에 관 하여는 「특별수사청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 관이 성실하게 보완수사 착수 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 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 ⑦ (생략)
- ⑧ (생략)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 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 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 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 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 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 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 자에 대하여 <u>경찰관서</u>에 동행 함을 요구할 수 있다. 받은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다.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삭 제>

ズ	1213	3조(체포	된 7	현행범인의	인도)
	1	(현행과	같-	을)	
	2				
				-경찰관서	또는
	ス) י	방특별수	사초	}	

제222조(변/	나자의	검시)	1	변	사
자 또는	변사의	의심兒	있는	사	체
가 있는	때에는	: J	소재	지	를
관할하는	지방검] 찰청검] 사기	<u>}</u>	검
시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 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第228條(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 の 對하여 告訴할 者가 없는 境遇에 利害關係人의 申請の 以으면 <u>檢事는</u> 10日 以內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한다.
-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 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u>검사 또는 사법경찰</u> 관은 공소제기 또는 수사
 ② (현행과 같음) ③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u>

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 정 등) ① (생 략)

- ② <u>검사는</u>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 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u>있다.</u>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등) (생 략)

<신 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③
있고,
사법경찰관의 전문수사자문위
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
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치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하
게 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
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 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 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 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 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 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 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 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 등)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이 성실하게 재조사 착수에 응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